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(제4조제18호·제19호 및 별표 15의4·15의5 신설)

가. 제・개정 이유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

나. 제・개정 내용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및 같은 협정 제2.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규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 음

라. 입법효과

○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 음

2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(제7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14호 신설)

가. 제・개정 이유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

나. 제・개정 내용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기관증명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으로 규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 음

라. 입법효과

○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 음

3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(제8조제9항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른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규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 음

라. 입법효과

○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 음

5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(제15조제18항,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규정함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 음

라. 입법효과

○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 음

6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(제24조제18호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

- 간접조사: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
- 직접조사: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, 현지조사는 간접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 음

라. 입법효과

○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 음

7.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 물품 등(제30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

나. 제·개정 내용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의 회원국으로부터 전시·시연을 위한 물품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

○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250달러 이하의 상용견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없 음

라. 입법효과

○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없 음